
第53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會議
錄 第7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2年3月3日(火) 午前11時

場所 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市立大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文化藝術振興基金助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李丁煥 議員 外 1人 發議) ... 2面
 2. 서울市立大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李丁煥 議員 外 1人 發議) ... 2面
 3. 서울特別市文化藝術振興基金助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李丁煥 議員 外 1人 發議) ... 2面
 4. 서울特別市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曹沼鉉 議員 外 9人 發議) ... 2面
-

(11時 開議)

○委員長 金泰雄; 座席이 整頓되었습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3回 臨時會 第7次 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를 開議합니다.

(議事棒 3打)

委員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臨時會期間 中에 여러 委

員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會議를 召集하게 된 것은 여러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月 21日 第6次 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 會議에서 議決된 內容으로 우리 委員會 發議로 條例를 改正하기 前에 各 常任委員會 意見을 照會키로 하였던 바 그에 대한 回信도 우리 委員會에 당도하였기에 이 問題를 다시 論議하기 위해서 오늘 會議를 召集하게 된 것입니다.

-
1. 서울特別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李丁煥 議員 外 1人 發議)
 2. 서울市立大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李丁煥 議員 外 1人 發議)
 3. 서울特別市文化藝術振興基金助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李丁煥 議員 外 1人 發議)
 4. 서울特別市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曹沼鉉 議員 外 9人 發議)

(11時 02分)

○委員長 金泰雄;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外 3件 및 特委改正案 同意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여러 委員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보시면서 저의 說明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特別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運營委員會 回信內容은 우리 特委改正案에는 별다른 異見이 없으나 地方自治法等 關係法令의 改正으로 인한 字句修正까지 포함하여 改正 推進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內容을 좀더 구체적

으로 說明해 드리면 第5條第2項第1號나項目 中 議會의 事務局을 議會事務處로 하고 同條 同項 第4條 다. 5 市民生活局 所管에 속하는 事項을 清掃事業本部 所管에 속하는 事項으로 改正하는 것입니다. 油印物を 봐 주십시오.

그리고 文化教育委員會에 照會한 市立大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文化藝術振興基金助成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은 우리 委員會의 改正案 內容에 異見 없으므로 통보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서울特別市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을 除外한 3件의 條例案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과 같이 우리 委員會 發議로 本會議에 改正案을 提出코자 하는데 여러 委員님들 다른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異議 없으시면 이 3件은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
(參照)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
(參照)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

○委員長 金泰雄; 다음은 서울特別市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水資源管理委員會의 意見은 小委員會에서 審査되었으나 아직 常任委 全體 議決을 얻지 못하여서 意見提示가 아직 없습니다 小委員會의 審査結果 給水條例 中 第3條 本文을 第1項으로 하고, 第2項을 天災地變, 기타 非常時 긴급히 給水할 때에는 다음 分期의 市議會에 報告하여서 承認을 얻어야 한다고 新設키로 하였고, 第5條 權利義務 承繼期間을 滯納分 徵收期間을 고려해서 우리 委員會 意見인 2個月을 3個月로 滯納分으로 修正意見이 있었기 때문에 適當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委員會 案으로 決定을 하고, 第8條第7項 工業用水와 飲用水를 따로 供給받는 경우의 飲用水 工事費는 工業用水를 使用하는 工場建築單位面積을 면제토록 하는 問題는 다른 異見이 있으므로 水資源管理委員會의 決定을 본 特委 案과 상이할 경우 連席會議를 하도록 하고, 이번 會期에는 保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異見이 없으십니까? 다른 意見이 없으십니까? 다른 意見 없죠? 없으면 그렇게 하기로..... 意見 없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可決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오늘 午前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委員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러 議案들이 5日 本會議에 上程되는 것 같습니다. 그 本會議에는 우리 康明秀 幹事님께서 나가셔서 이상 우리 委員會에서 議決된 事項을 本會議에 報告하고 提案說明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남은 改正案에 대해서는 차후 3月 中에 會議를 召集해서 審議檢討해 가지고 다음 會期

에 議決토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李丁煥 委員;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泰雄; 네, 李丁煥 委員님 말씀하십시오.

○李丁煥 委員; 오늘 우리 條例審議特別委員會 進行過程을 보면서 우리가 本 委員會를 하기 전에 懇談會를 통해서 개략적인 意見調整을 거쳤기 때문에 모든 것이 異議가 없습시다로 일관되어서 참 이 委員會 자체가 굉장히 議事記錄도 남는데 굉장히 委員들의 意見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한편 생각하면 맥빠진 그런 委員會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물론 懇談會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意見調整도 중요하지만, 實質的으로 懇談會場所에서 本 委員들이 느끼고 생각했던 점을 바로 이 本 委員會 자리에 나와서 意見を 開陳함으로써 各 委員들의 意見이 議事記錄에 남을 수 있도록 會議가 進行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만 하더라도 懇談會 자리에서는 충분한 各 委員님들의 意見開陳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本 委員會에서는 아무런 意見이 없는 것처럼 議事記錄에 남는 것은 바람직한 委員會 運營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음 우리 委員會가 開催될 때에는 事前 意見調整도 좋지만 그런 各自 委員들의 意見開陳이 本 委員會에서 開陳될 수 있도록 會議를 進行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基烈 委員; 그 점에 同意합니다.

○委員長 金泰雄; 李丁煥 委員님의 우리 會議進行에 대한 좋은 충고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會議를 運營하는 것이 順理고 尙當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쁜 日程에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시간상으로도

그런 問題도 있고, 그래서 우리 市議會 事務處要員들이 準備된 會議을 進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向後 會議은 여러분들이 意見을 討論은 충분히 討論해서 이 會議가 진지한 會議가 되도록 그렇게 努力을 하고 그런 會議準備를 努力하겠습니다. 그렇게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康明秀 委員님…….

○康明秀 委員; 저는 아까 時間이 여의치 않아서 서울特別市 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內容에 보면 市民生活局 所管에 속하는 事項이 있는데요 清掃事業本部 所管에 속하는 事項,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清掃業務를 事業本部로 事業運營이 바뀌어지면서, 한 번 新聞에 어떤 內務部の 節次를 밝아야 될 그러한 節次를 다 밝지 아니하고, 서울시에서 이 條例가 통과 되어서, 公布하여서 잘못하면 條例公布된 것이 死文化의 위기에 있다 하는 그 記事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林相德 專門委員에게 조금 묻고 싶은 것은 常任委를 거쳐서 저희 特委에 올라오는 동안 그 節次가 지금 서울시에서 瑕疵없이 후속적인 措置가 다 끝나고, 지금 清掃事業本部라고 하는 이 名稱을 우리가 特委에서 使用을 하고 이렇게 條例改正을 해도 후에 이상이 없는 것인지, 問題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專門委員 林相德; 2月 17日字로 法令改正이 되었습니다.

○康明秀 委員; 다 完了되었습니까?

○專門委員 林相德; 네.

○委員長 金泰雄; 그러시면 아까 우리가 懇談會場에서 잠깐 말씀드렸습시다만 給水條例件에 관해서는 水資源管理委員會 決定이 오늘 水資源管理委員會 會議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 特委에 回信되는 대로 連席會議를 해서 決定을

하도록 하고 이번 會期에는 保留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금 전에 여러 委員님들에게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異議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劉起鍾 委員;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劉起鍾 委員입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시간에 우리 委員님들께서 나와주셨기 때문에 우리 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에서 우리 案은 오늘 아까 懇談會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案은 決定을 하고, 그 다음에 常任委員會에서 넘어오는 것은 그 때 가서 連席會議에서 折衷을 해주어야지 우리가 會議錄 上이나 오늘 議決事項에서 지금 현재 工業用水에 대한 施設費를 그 全體面積에 賦課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懇談會場에서 委員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부분의 委員님들이 그것은 不當한 處事가 아니냐, 그 工場의 全體面積에 대해서 賦課를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案을 決定하고 그리고 넘어가는 것이 다음에 우리가 저쪽 常任委員會에서 議決된 事項이 넘어오고 連席會議를 하더라도 우리 委員님들의 一致된 意見으로 해서 調整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懇談會議場에서 論議되었던 事項들이 우리 李丁煥 委員님 말씀대로 여기 會議錄에도 記錄이 되어 주어야지 그 동안에 우리 會議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論議된 事項 中에서 우리의 意見들이 이렇게 一致가 되었다 하는 것이 남아 주어야지, 우리가 連席會議를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의 意見을 貫徹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問題는 우리 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 委員님들이 다시 모여서 會議하고 이런 것이 힘들고 또 아까 懇談會議場에서 거의 意見이 一致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드렸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調整

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泰雄; 감사합니다. 지금 劉起鍾委員님의 意見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特委에서 서울特別市水道事業設置條例中 給水條例, 이것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討論을 한번 해 볼까요? 그러기를 원합니까? 問題點에 대해서.....

○康明秀 委員; 康明秀 委員입니다. 그러면 이 問題를 曹沼鉉 委員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林相德 專門委員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 지금 常任委員會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또 執行部에서 생각하는 것을 要點整理만 간단하게 먼저 듣고 그래서 한 번 같이 結論으로 誘導를 하죠.

○委員長 金泰雄; 여러 委員님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同意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同意합니까? 再請하시죠?

(「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專門委員 나오셔서 重要的 要旨를 專門委員이 準備한 改正案과 또 執行部の 意見 또 거기에 대해서 우선 說明해 주시고 우리 委員님들의 意見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林相德; 專門委員 林相德입니다. 서울特別市給水條例改正案은 第3條가 現行은 「給水區域은 서울特別市 일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特別市長이 公益 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市 이외의 區域에도 給水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市 이외의 區域에 給水할 때에는 市議會의 議決을 얻도록 하는 것은 豫算의 義務負擔行爲 내지는 主要財産의 處分行爲에 속하는 事項이므로 地方自治法 上으로도 適法 妥

當한 것으로 보이고 天災地變, 기타 非常時 給水を 한 때에는 다음 會期에 市議會에 報告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라는 第2項 新設問題를 執行部側 意見같습니다. 이 第2項 新設問題는 執行部側 意見과 水資源管理委員會 小委員會에서 決定된 事項입니다.

第5條 權利義務 承繼問題는 公共料金の 時效期間인 5年間 滯納된 水道料金を 새로운 취득자에게 承繼시키는 것은 선의의 第三者에 대한 過重한 義務負擔으로 民願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徵收義務를 懈怠한 公務員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結果를 초래하므로 2個月의 滯納分까지만 承繼토록 本 特委 案이 되었습시다만, 執行部에서 滯納分 徵收하는 期間을 고려해 가지고 3個月의 滯納分까지 承繼토록 水資源管理委員會 小委員會의 決定事項이기 때문에 合理性이 있어서 3個月로 修正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第8條 費用負擔은 工場이 별도의 給水施設을 設置하고 工業用水를 使用하면서 寄宿舎와 食堂用途 建物에만 飲用水를 供給받고자 함에도 工業用水를 使用하는 全體工場 單位面積에 대한 工事費를 負擔시키는 것은 工業用水 給水裝置와의 이중부담으로 衡平성과 合理性이 없다고 思料되고, 飲用水使用 建築單位만 연면적당 一定金額으로 改正하는 것이 妥當하다는 것으로 思料됩니다. 그러나 工業團地 안의 工場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工業用水와 飲用水를 따로 供給받는 모든 工場에 同一하게 적용하는 것이 妥當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工業團地部分을 없애고 工場이 工業用水와 飲用水를 따로 供給받는 경우 工事費는 工業用水를 使用하는 工場建築 單位面積을 제외한 飲用水 使用 建築 單位面積當 一定金額으로 한대로 改正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第15條의 (工事施行에 隨伴한 責任) 「市長은 工事施行으로 인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미치게 하였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로 現行條例에 規定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削除코자 하는데 工事施行으로 인한 他人의 損害는 營造物 管理瑕疵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이 無過失責任原則임을 감안하여 특정인의 특별한 損害는 責任을 져야하므로 本 條項을 削除하는 것이 民主行政의 原則에 부합되는 것으로 思料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第25條(給水量的의 計量調整) 第4項의 種別을 같이 하는 用途의 給水를 2個 이상의 量水器로 計量하는 경우에는 量水器 各個의 使用量を 합산하여 給水使用料를 算定한다. 그 但書條項에서 단, 建物使用이 區劃되고 그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分離水栓을 許容한다는 內容으로 改正코자 합니다. 그 理由는 建築使用 面積이 區劃되고 있고 使用者가 다른 경우에도 分離水栓을 기피하여 합산함으로써 賃貸使用者 個個人이 他人이 給水量까지 합산한 累進率에 의하여 負擔으로 인한 民願을 해소하는 것이 使用者負擔原別에 합당하기 때문에 改正기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第32條第1項1目은 建築法違反 등에 대하여 建築法에 의한 是正指示, 使用中止, 強制撤去, 刑事告發 등 方法이 있음에도 市民生活과 직결되는 停水處分은 가장 잔인한 制裁方法이므로 이를 지양하기 위하여 解除하는 것이 奉仕行政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改正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第34條 盜水行爲의 根絶과 遵法精神 高揚을 위하여 過怠料 處分 外 刑事告發 措置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盜水行爲者는 刑事處罰 告發措置해야 한다는 強行條項을 新設코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第40條 量水器點檢을 法人에 委託할 경우 현재 1,000萬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商法 上 株式會社 最低資本金인 5,000萬원 이상과 一致하도록 改正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檢討事項을 報告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泰雄; 專門委員의 檢討에 대해서 質問事項이 있거나 意見계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劉起鍾 委員; 지금 우리 整備對象條例 檢討意見書を 보면 두 번째 장에 工業團地 안의 工場이 工業用水와 飲用水를 따로 供給받는 경우의 工事費는 工業用水를 使用하는 工場建築 單位面積을 제외한 飲用水使用 建築 單位面積當 一定金額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本委員은 工業團地 안의 工場만 이 아니고 工場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되어 줘야지 이렇게 하면 工團 안에 들어간 것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曹沼鉉 委員; 아닙니다. 지금 새로 改正된 것이, 지난 번 것이 工業用途 안에 있었는데 새로 改正되는 것은 工場을 包括해서.....

○劉起鍾 委員; 아, 그래요? 제가 다른 전에 意見書を 봐 가지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의 意見은 지금 현재 다른 商業用建物도 奢侈性的 食用水를 供給받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 大衆用的 물을 供給받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工事費가 이중으로 賦課가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호텔에 사우나 施設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 사우나에 供給되는 물은 奢侈性 물이기 때문에 料금이 굉장히 비싼데 그 경우에 工事費를 호텔 全體面積의 工事費로 받느냐, 그렇게 제가 質問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

工業用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는데 다른 商業用建物이나 호텔建物에서 이 중 一般用으로 쓰는 것이 있고 奢侈性 물을 쓰는 경우가 있을 때 奢侈性 물로 별도의 施設을 할 경우에 호텔全體面積에 대한 工事費를 받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專門委員 林相德; 아닙니다.全體 建物面積에 한번 받으면 種別에 따라서 計量器만 별도 設置합니다.

○劉起鍾 委員; 그렇죠? 그러니까 유독 지금 工場에 한해서만 이중으로 工事費를 賦課하고 있는 것이 맞죠?

○專門委員 林相德; 네.

○劉起鍾 委員; 그렇기 때문에 本委員이 생각했을 때는 衡平의 原理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3,000坪의 工場을 갖고 있는 會社가 事務室用으로 100坪의 事務室을 사용하고 있는데 事務室에 사용하는 一般飲用水를 工事를 하기 위해서 3,000坪에 대한 工事費를 낸다는 것은 結果적으로 工業用水 딸 때 3,000坪, 食用水 들어올 때 3,000坪, 6,000坪의 工事費를 負擔한다는 것은 어느 다른 데는 절대 그런 것이 없는데 工業, 특히 우리는 지금 中小企業 輸出競爭力도 向上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中小企業에 이렇게 過重하게 負擔을 시켜준다는 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本委員은 이것은 衡平에 맞게 飲用水에 사용되는 面積에 대한 工事費만 負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泰雄; 다른 意見 있어요? 李丁煥 委員 말씀하세요.

○李丁煥 委員; 李丁煥 委員입니다. 여기 上水道事業本部의 執行部側의 專門家가 멀어 가지고 우리 委員들끼리만 이 問題를 論한다는데 상당히 問題點 도출에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방금 劉起鍾 委員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편 同意도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또 다른 側面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령 3,000坪의 工場에 工業用水를 끌어들이어서 工業用水 費用을 받고 다시 그 중에 100坪의 事務室에 의한 飲用水를 끌어들이는데 費用을 전체 3,000坪에 대한 工業費를 받는 것이 이중부담이 아니냐, 이렇게 劉起鍾 委員께서 생각을 하시고 그것은 衡平에 맞지 않는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3,000坪의 工場을 짓기 위한 工業用水는 당연한 것이고, 그 3,000坪에 勤務하는 工場職員, 事務室職員들을 위한 飲用水는 단지 100坪 事務室에만 飲用水 水道라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3,000坪 建坪, 工場 곳곳에 그 곳에 勤務하는 工場 生産職勤勞者를 위해서 곳곳에 飲用水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食用水는 3,000坪 전체의 飲用水라인이 가있는 것이지만 단지 事務室이 100坪이다 해서 事務室 100坪에만 飲用水라인이 있고 나머지 2,900餘 坪에는 飲用水라인이 안 가 있느냐, 이런 技術的인 問題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였고, 또 하나 工場이 3,000坪이다 하면 또 3,000坪에 따른 것만큼의 生産職勤勞者들도 많이 勤務하게 될 것이니까 단지 事務室建坪만을 가지고 우리가 飲用水에 대한 水道工事費를 받는 것이 정말 우리 意見대로 衡平에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은 보다 深思熟考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의 얘기보다는 보다 더 上水道事業本部에 일을 執行하는 執行部署의 擔當者를 우리 議會에 불러 놓고 한번 우리 意見도 그 擔當者를 놓고 한

번 충분히 들어가면서 結論을 유도해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問題가 지금 水資源管理委員會에서 結論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特別委員會에서도 어떤 結論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執行部署의 擔當者를 立會시켜서 우리 意見과 執行部の 意見을 우리가 충분히 반영하면서 意見의 結論을 유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泰雄; 다른 意見 없으시죠? 그러면 委員長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條例特委의 構成目的是 市民便益에 우선되는 條例를 만들어내고 기이 不便했던 條例를 改正하자, 이런 의도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모든 것은 우리 意見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이라 할 수 있는 執行部意見, 또 다른 市民의 意見, 이런 것을 잘 收斂해서 가장 合理的인 整備案을 만들고 이를 또 우리가 可決해서 實行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 委員님들도 그런 意見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意見은 여러 가지로 分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劉起鍾委員님이 말씀하신 그런 妥當性도 있고 또 지금 李丁煥委員님이 말씀하신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隘路나 問題點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一次 우리가 執行部에 意見을 照會한 바 있습니다. 公文으로 그것도 했어요. 했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 公文이 回信期日보다 아마 한 이틀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여하튼 그 사람들의 意見이 있습니다. 있고,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水資源委員會에 意見을 照會한 바 아직 集約되지 못한 것 같아요. 意見들이..... 그래서 그것은 오늘 또 水資源管理委員會가 開催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대로 執行部の 意見을 거기서도 聚음을 해서 收斂을 했을

테고 또 水資源委員會 委員님들의 意見도 그런 대로 集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意見을 일단 우리가 받은 다음에 그래도 어떤 問題點이 있다면 關係公務員을 立會시켜서 意見을 들어보고 우리의 意見을 開陣해서 綜合 聚合해서 여기 알맞는 몇몇한 그런 改正案을 만드는 것이 수순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시다만 이번에 그 意見을 접수한 다음에 우리가 改正案을 本會議에 내자,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會議에 案件이 3個가 上程이 됐는데 기이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얘기한 3件의 條例改正案은 별 異議가 없어서 이것은 우리가 통과를 보았고 다만 이 給水條例가 意見이 분분한데 그 점은 앞으로 향후 會議나 우리 日程을 그렇게 잡아 가지고 調整해서 다른 異見이 없는 그런 案을 우리가 採擇을 하기로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저도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이런 檢討案, 또 저쪽의 案, 이런 것이 事前에 우리 委員님들한테 配布가 되어 가지고 충분히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꼭 마지막, 전날 여기에 우리가 갈아 놓아야 압니다. 이것은 우리 條例特委 뿐 아니라 다른 常任委員會에서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是正이 되어야 충분히 檢討가 되고, 충분한 熟知를 해와서 그 意見을 提示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이 안타깝습시다만 오늘도 아마 그런 緣由로 해서 이런저런 意見을 우리가 開陣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이 3件의 서울特別市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시立大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또 서울特別市文化藝術振興基金助成運用

條例中改正條例案은 可決되었음을 여러분들이 想起해 주시고 다만 서울特別市給水條例는 水資源管理委員會 意見이 回信되는 대로 차후에 우리 本 特委와 連席會議를 열어서 意見을 決定하도록 하고 이번 會期에는 上程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意見을 集約해서 可決을 하였습니다. 異議 없으시죠?

(「異議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曹沼鉉 委員; 曹沼鉉 委員입니다. 이번 給水條例改正案이 常任委員會에도 回附되었고 우리 特委에서 論議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個人的으로 앞으로 우리 特委가 무엇인가 轉向的인 發想의 轉換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基本的으로 特委가 생긴 自體가 市議會가 構成이 되면서 市民의 代表로서 構成이 되었는데 항상 하는 식이 그렇습니다. 執行部側은 그래 만들어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적당히 로비하고 우리의 事情을 얘기하면 항상 통과했다 하는 이런 前例가 우리 일 자체를 굉장히 허무하게 만들고, 항상 學論된 얘기지만 存立自體가 항상 의문시되는 이런 前例를 밟아 왔습니다. 그동안..... 비단 特委에 局限된 問題點만은 아닙니다. 모든 制度가 變更되거나 改正될 때에는 다소의 혼란과 그런 부득이한 過渡期는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이 두려워 가지고 다른 條例改正案보다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市民의 便에 서서 만든 條例改正案이 執行部側의 어떤 安逸한 意見書, 意見 自體도 다 저희들이 납득할 만 하지가 못합니다. 지금..... 그런 점으로 봐서 제가 特委委員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뭔가 發想의 轉換으로, 새로운 기분으로 같이 한 번 일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泰雄; 감사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여

러 委員님들도 우리 市民 便에 서 있습니다. 있는데, 그 간에 우리 경험이 좀 微賤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졸속히 問題를 決定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서 深思熟考한 그런 行動舉止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執行部內서 온 意見과 우리의 專門委員이 檢討한 意見을 오늘 충분히 다시 읽어보시고, 또 水資源管理委員會에서 議決된 事項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충분한 市民의 便에 선 우리의 뜻을 이렇게 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몇 사람이 와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합니다만 그럴 때 그렇게 우리 意見을 開陣했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意見을 조금 공부하시고 檢討를 하셔서 다음 會期에 우리의 뜻이, 市民의 바램이 議決되도록 이렇게 하시고 오늘 會議을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1時 43分 散會)

○出席委員

金泰雄 康明秀 李丁煥 曹沼鉉

孟今龍 李基烈 劉起鍾 元松喜

金炳植

○專門委員

林相德